

참고 7.

주요국의 바젤Ⅲ 최종안 도입 현황 및 시사점¹⁾

바젤은행감독위원회²⁾(BCBS)가 2017년 12월 발표한 바젤Ⅲ 최종안(잔여규제 개혁안)의 이행시기³⁾(2023년 1월)가 지난 가운데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바젤Ⅲ 도입 작업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회원국은 이미 바젤Ⅲ 최종안을 도입·시행 중이나 글로벌 은행시스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국이 마련 중인 바젤Ⅲ 도입안의 세부 내용과 그 파급영향에 대해 은행 등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바젤Ⅲ 최종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주요국의 바젤Ⅲ 도입 현황과 시사점을 점검하였다.

바젤Ⅲ 최종안의 주요 내용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은행 규제자본비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자산 산출의 신뢰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바젤Ⅲ 최종안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은행간 규제자본비율의 비교가능성 및 투명성 강화를 도모하였다.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바젤Ⅱ 신용리스크 표준방법(Standardised Approach)의 위험가중치를 자산별 위험수준에 따라 세분화⁴⁾하여 리스크 민감도를 제고하였다. 또한 은행의 차주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를 의무화하여 외부신용등급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었다. 표준방법으로 산출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공시의무도 추가되었다.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⁵⁾

글로벌 은행이 내부등급법(Internal Ratings-Based Approach) 적용 시 모수값을 과소 추정함에 따라 국가 및 은행간 위험가중자산의 편차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모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를 위해 특정 익스포저(주식, 대기업·금융기관이 거래상대방인 자산)에 대해 내부등급법 사용을 제한하고, 모수값(부도율, 부도시 손실률, 부도시 익스포저)의 과소 추정을 방지하기 위해 하한(input floor)을 설정하였다.

신용가치조정 리스크⁶⁾ 규제체계

신용가치조정(CVA, Credit Valuation Adjustment) 리스크 측정 시 내부모형법 사용을 불허하고 표준방법을 개선했다. 특히 금리, 외환 등 시장리스크 요소별로 구분하여 CVA 리스크를 평가함으로써 리스크 민감도를 높였다. 다만, 비중양청산 파생상품의 거래규모가 명목가액 1,000억유로 이하인 경우 간편법을 적용하여 CVA 리스크를 간단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 본고는 이소윤·현소연·조은정·이종석(글로벌금융규제팀)이 작성, 이종한(금융시스템분석부장)·정연수(글로벌금융규제팀장)가 검토하였다.
- 2) BCBS의 상위 통할기구인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 회의」(GHOS)가 2010년 9월 바젤Ⅲ 1단계 개혁안(initial phase of Basel III reforms: 보통주자본 중심의 규제자본 개편, 완충자본·거액익스포저 규제·레버리지비율·유동성 기준·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도입 등)을 승인한 데 이어 2017년 12월에는 바젤Ⅲ 최종안(finalised Basel III reforms)을 승인하였다(「바젤Ⅲ 시장리스크 규제체계」는 2016년 1월에 발표한 후 2019년 1월에 수정안을 발표).
- 3) GHOS는 바젤Ⅲ 최종안의 이행시기를 코로나19 등을 감안하여 당초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연기하였다.
- 4) 예를 들어, 은행 및 기업 익스포저의 경우 리스크 범주를 이전보다 세분화하여 고위험자산에 대해 바젤Ⅱ보다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부동산담보 익스포저는 LTV 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20~70%)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 5) 리스크 범주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단순 적용하는 표준방법과 달리 은행이 자체 데이터와 리스크 측정시스템을 활용하여 모수값을 추정하고 이를 내부등급법 산식에 대입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 6)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악화(신용스프레드 확대 등)에 따른 평가손실 위험을 의미한다.

운영리스크⁷⁾ 규제체계

기존 운영리스크 표준방법을 새로운 표준방법으로 대체하고 내부모형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새로운 표준방법은 운영리스크 관리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영업규모 측정치(business indicator component) 외에 손실사건 누적규모(loss component)를 반영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토록 하였다.

레버리지비를 규제체계

총익스포저(분모) 항목의 산출방식을 일부 수정⁸⁾한 가운데,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G-SIB,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에 대해서는 G-SIB 추가 자본의 50%를 레버리지비를 추가 자본⁹⁾(기본 자본)으로 부과하도록 하였다.

자본하한

내부모형 사용으로 발생하는 위험가중자산의 과소 산출 유인을 억제하고 국가 및 은행간 산출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하한(output floor)을 강화하였다. 내부모형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위험가중자산 규모가 표준방법으로 산출된 위험가중자산의 72.5% 이상이 되도록 하되 이를 2023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¹⁰⁾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시장리스크 규제체계

시장리스크가 적용되는 금융상품의 분류기준을 명

확히 하여 은행의 규제차의 가능성을 축소하고 내부모형에 대한 검증절차를 강화하였다. 또한 표준방법의 리스크 민감도를 개선하고 금융상품의 부도리스크 등을 반영하였다(참고 7-1).

참고 7-1. 바젤III 규제체계 개요

분자 : 규제자본 (regulatory capital)	보통주자본 중심의 규제자본 개편
	완충자본
	G-SIB 추가자본 규제
분모 : 위험가중자산 (risk-weighted assets)	신용·시장·운영 리스크 표준방법 강화
	내부모형 사용 제한
	자본하한
레버리지비율 규제	레버리지비율 산출기준 수정
거액익스포저 규제	
유동성 기준	
G-SIB 레버리지비율 규제	

주 : 바젤III 1단계 개혁안(10년 9월 발표) 바젤III 최종안(17년 12월 발표)

주요국의 바젤III 도입 현황

BCBS 회원국 가운데 중국, 일본, 한국¹¹⁾ 등 6개국¹²⁾이 바젤III 최종안의 도입을 완료하였으며 미국, 유럽연합, 영국 등은 2025년 중 시행을 목표로 현재 도입 작업을 진행 중이다.

미국은 2023년 7월 자국의 바젤III 규제안(Basel III endgame proposal)을 발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였다. 미 바젤III 규제안의 주요

7) 내부직원 행위, 상품 하자, 시스템 장애, 기타 외부 요인 등에 의해 발생하는 운영상의 모든 측정 가능한 손실과 관련된 위험이다.
8) 난외자산 및 파생상품 익스포저 산출방식(중요은행 지급준비금 제외, 공정가치로 평가되며 증권대금 동시결제 요건을 충족하는 미수금 등의 상계 허용 등)을 신용리스크 표준방법과 동일하게 변경하였다.
9) G-SIB은 시스템적 중요도 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1.0-3.5%의 추가 자본규제(보통주자본)가 적용되므로, 예를 들어 현재 2%의 추가 자본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G-SIB의 경우 추가 자본의 50%인 1%의 추가 레버리지비율이 적용되어 레버리지비율은 총 4% 이상(기본 레버리지비율 3% + 추가 1%)으로 유지해야 한다.
10) 2023년부터 5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2028년에 72.5%에 도달하도록 설정하였다.
11) 우리나라는 2020년 6월말부터 바젤III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체계를 조기 시행한 데 이어 자본하한은 2022년 11월, 운영 및 시장 리스크 산출체계·신용가치조정 리스크 규제체계는 2023년 1월, 거액익스포저 규제는 2024년 2월부터 도입·시행 중이다.
12) 2023년 11월 기준 BCBS 회원국(27개) 중 캐나다,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6개국이 바젤III 최종안 도입을 완료하였다.

내용은 규제대상 은행기준을 총자산 1,000억달러로 하향 조정(기존 총자산 2,500억달러 이상)하여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강화된 리스크 평가방식(Expanded Risk-Based Approach)을 적용하는 것이다. 특히 신용·운영 리스크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내부모형 사용 금지,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위험가중치 강화¹³⁾, 시장리스크 내부모형법 승인요건 강화, G-SIB¹⁴⁾ 및 완충자본 규제 강화¹⁵⁾ 등을 통해 바젤Ⅲ 기준에 비해 규제자본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결과¹⁶⁾를 반영하여 2024년 중 규제내용을 확정하고, 2025년 7월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¹⁷⁾

유럽연합은 2021년 10월 바젤Ⅲ 규제안(The final elements for the implementation of Basel III)을 공개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24년 6월 최종안을 공표하였다. 유럽연합의 바젤Ⅲ 규제안은 적용대상 이 국제영업 영위 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은행이며, 바젤Ⅲ 기준 대비 신용리스크의 표준방법과 내부등급법 규제를 일부 완화¹⁸⁾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비금융기업과의 파생상품 거래 시 신용가치조정 리스크를 적용하지 않고, 무등급기업(unrated corporate), 저위험 모기지 익스포저 등에 대해서는 2032년까지는 완화된 자본하한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영국은 2023년 12월 바젤Ⅲ 기준의 이행(implementation of the Basel 3.1 standards)에 관한 정책성명서¹⁹⁾를 발표하였다. 영국 바젤Ⅲ 규제안은 신용리스크의 경우 무등급기업은 리스크에 따라 차등화된 위험가중치²⁰⁾를 적용하고,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을 도입하였다. 한편 연금펀드와 거래 시 신용가치조정 규제와 비금융기업 등에 대한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규제를 바젤Ⅲ 기준보다 다소 완화하였다. 동 규제안은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며 4년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2030년 1월에 완료될 예정이다(참고 7-2, 7-3).

참고 7-2. 주요국 바젤Ⅲ 도입안 주요 특징

국가	규제	특징
미국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위험가중치 강화 내부등급법 사용금지
	신용가치조정	장외파생상품으로 적용범위 한정
	G-SIB 규제	G-SIB 대상 레버리지비율 강화
	자본보전완충자본	스트레스완충자본 2.5% 이상 적용
유럽 연합	적용범위	모든 은행에 바젤 기준 적용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및 내부등급법 일부 완화
	신용가치조정	비금융기업과 거래 시 적용 제외
영국	자본하한	일부 익스포저에 대해 2032년까지 완화
	신용리스크	무등급기업 익스포저에 대해 차등화된 위험가중치 적용
	신용가치조정	상업용 부동산에 위험가중치 하한 도입 연금펀드와 거래 시 위험가중치 완화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거래상대방이 연금펀드와 비금융기업인 경우 익스포저 산출계수(a) 완화

자료: 미 연준, EBA, BoE 등

13) 주거용 부동산, 소매(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바젤Ⅲ 기준 대비 각각 +20%포인트, +10%포인트 강화하였다.

14) G-SIB에 대해서는 바젤Ⅲ 레버리지비율(3%, 일반은행 대상)보다 강화된 레버리지비율(5%)을 적용한다.

15) 바젤Ⅲ 기준은 자본보전완충자본의 경우 위험가중자산의 2.5%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데 비해 미 바젤Ⅲ 규제안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2.5% 이상을 적용한다.

16) 의견수렴 기간(23년 7월 27일~24년 1월 16일) 중 접수된 의견 대다수가 미국 바젤Ⅲ 최종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 다만, 접수 의견을 바탕으로 한 수정안 마련, 추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감안하면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거나 규제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18) 일부 중소기업과 공공인프라투자 익스포저의 위험가중치를 규모 및 기타 적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바젤 기준보다 완화하였다.

19) 동 성명서는 시장 및 운영 리스크, 신용가치조정,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에 관한 내용을 포괄한 첫 번째 성명서이며, 두 번째 성명서는 신용리스크, 자본하한, 공시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금년중 발표될 예정이다.

20) ① 바젤Ⅲ 기준에 따라 무등급기업에 100%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거나, ② 투자적격 또는 투자부적격으로 판단되는 경우 각각 65%, 135%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참고 7-3. BCBS 회원국의 바젤Ⅲ 최종안 이행 현황¹⁾

최종 규제안 이행
 이행 예정
 해당 없음

회원국	위험기반 자본규제						레버리지비율 규제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CVA 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자본하한	총익스포저	G-SIB
미국	'25.7월	-	'25.7월	'25.7월	'25.7월	'25.7월	0	0
유럽연합	'25.1월	'25.1월	'25.1월	'25.1월	'25.1월	'25.1월	0	0
영국	'25.7월	'25.7월	'25.7월	'25.7월	'25.7월	'25.7월	0	0
일본	0	0	0	0	0	0	0	0
중국	0	0	0	0	0	0	0	0
한국	0	0	0	0	0	0	0	-

주: 1) 2023년 12월 기준
자료: BCBS 등

시사점

주요국이 진행 중인 바젤Ⅲ 도입 작업이 마무리되면 은행부문의 복원력 강화²¹⁾를 통해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은행간 규제자본비율의 산출편차도 축소되어 글로벌 은행간 복원력 및 리스크 현황 비교가 용이해질 것이다. 일부 국가의 경우 바젤 기준과 자국 규제안 간 차이(deviation)가 일부 관찰되고 있으나, 이는 BCBS의 규제 일관성 평가 프로그램(Regulatory Consistency Assessment Programme)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될 예정이다.²²⁾

일부에서는 은행의 규제자본 부담 증가, 영업행태 변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뿐 아니라 2023년 은행 위기 등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바젤Ⅲ의 완전하고 일관된 이행이 은행산업의 위기대응력 제고에 더욱 긴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바젤Ⅲ 최종안을 당초 합의된 일정에 따라 신속하게 이행함으로써 국내 은행부문의 복원력과 함께 은행감독체계의 대외 신인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글로벌 은행시스템 내 영향력이 큰 주요국의 바젤Ⅲ 규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²³⁾에 대해서는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3년 은행 위기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과거와 다른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²⁴⁾ 발생 가능성에 대한 감독 측면의 대응 노력도 지속해야 할 것이다.

21) 바젤Ⅲ 최종안이 도입되면 유럽연합 및 영국은 규제대상 은행들이 보유해야 할 기본자본이 각각 약 10%, 3% 증가하고, 미국 은행들은 보통주자본 요구량이 약 1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EBA, BoE, 미 연준).

22) 바젤 기준은 최저규제기준이므로 동 기준보다 강화된(super-equivalent) 규제는 허용된다.

23) 일부 시장참가자는 글로벌 대형은행의 영업모델 변화에 따른 신흥국에 대한 신용 위축, 비은행금융기관의 역할 확대, 국가간 경쟁 여건 변화 가능성 등에 주목하고 있다.

24) 비부보예금 및 특정 유형의 예금자 집중도 증가, 보유채권의 미실현 평가손실 확대, 기존 유동성 감독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운 유동성 불일치 심화 등이 그 예이다.